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03호

2020. 9. 2.

건명	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환경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8. 25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 관련 수의계약 사유를 일부 개정하고,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”을 명시하였으며,
-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, 폐기물 분리배출 확립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대행업체의 대행계약(수의계약)을 위한 사유 추가(안 제7조제4항)
- 나. 연속2회 이상 탁월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계약연장은 연속2회 이내에서 연속1회 이내로 변경(안 제7조제6항)
- 다.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추가(안 제7조의3)
- 라.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및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배출방법의 추가(안 제7조제8항)
- 마.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시 적정무게 및 폐기물 밀도 등을 명시함.(안 제8조제10항)
- 바. 폐기물 분리배출 확립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(안 제9조의2)

## □ 검토의견

-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 및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,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, 제14조의5, 제15조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,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 제2항 제4호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104호

2020. 9. 2.

건명	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환경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0. 8. 25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

## 보 고 내 용

###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위임(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) 범위를 넘어 조례로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함.

### 주요내용

- 시설부지 매입 비용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중 주민편익시설 설치 면적에 관한 내용 삭제(안 제5조제2호, 별표 1)

###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한 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